평창군 군세 징수 조례안

의안 번호	336

제출년월일 : 2017. 6.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1. 제안이유

「지방세기본법」에서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분야가 「지방세 징수법」으로 분리·제정되고「지방세기본법」이 전부개정됨에 따라, 「평창군 군세 기본 조례」에 규정된 군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분리·이관하여 「지방세징수법」의 체계에 맞도록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목적, 법령과의 관계, 조례 시행에 관한 규칙 등을 규정함 (안 제1조, 안 제2조, 안 제4조)

나. 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에 대한 규정을 「평창군 군세 기본 조례」에서 삭제하고 이 조례에 규정함(안 제3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별첨 1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　　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　　타

1) 입법예고 : 평창군 공고 2017-528(2017.4.27～5.17) 결과,
특기할 사항 없음

2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(기획감사실-5170호/2017.4.27)

3) 부패영향평가 : 원안동의(기획감사실-5877호/2017.5.18)

4) 성별영향평가 : 원안동의(주민생활지원과-26553호)

5)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: 별첨 2

평창군 조례 제 호

평창군 군세 징수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세징수법」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법령과의 관계) 평창군 군세(이하 “군세”라 한다)의 징수에 관하여 「지방세징수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및 「지방세징수법 시행령」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3조(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) 법 제105조제1항제1호의 “성실납부자”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(취득세,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, 재산세,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에 한정한다)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.

제4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일반적 경과조치)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「평창군 군세 기본조례」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해야 할 군세의 징수에 대해서는

종전의 「평창군 군세 기본조례」 규정에 따른다.

② 군세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「평창군 군세 기본조례」에 따라 평창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에게 한 행위와 군수가 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군수에게 한 행위 또는 군수가 한 행위로 본다.

(별첨 1)

관 계 법 령

□ 지방세기본법

제5조(지방세의 부과·징수에 관한 조례)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세목(稅目), 과세대상, 과세표준, 세율, 그 밖에 부과·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의 시행에 따르는 절차와 그 밖에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.

□ 지방세징수법

2017년 3월 28일 법률 제14524호로 시행

제1조(목적) 이 법은 지방세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세 수입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.

(별첨 2)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(제3조제5항 관련)

1. 비용발생 요인 :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제3조제5항제1호

3. 미첨부 사유

- 이 조례 개정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됨.

4. 작성자

작성자	평창군 재무과장 이정의
연락처	(033) 330 - 2270